문서번호	세무1과-6040
결재일자	2015.4.1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서입총괄담당	세무1과장	기획경제국장	부구청장	
이치옥	김형원	최상균	정은수	04/13 김병환	
			예산	당	代이정희
협 조	한옥문화원			문화담당	노상훈
			세일	정리담당	0/광호
	기획예산과	장 이용식	벌인	관리담당	이종훈
	세무2과장	문영희	XH&FA	H12담당	윤찬구
	규제개혁담	당 김용환	XH&H	베1담당	김공배

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

2015. 4.

기획경제국 세무1과

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입법안 확정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세감면조례에 재산세 감면 관련 개정사항 반영
- 한옥밀집지역이 지정 공고됨에 따라 한옥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등록한옥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함

I 추진개요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개정으로 구세감면조례 개정 계획 구청장 방침 (세무1과-4522호, 2015.3.18.)
-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(2015.3.19.~2015.4.8.)
 - →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 없음
- 부패영향평가 및 인권영향평가 의뢰 (감사담당관, 2015.3.24.)
 - → 원안대로 동의
-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 (여성가족과. 2015.3.24.)
 - → 원안대로 동의
- ○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」일부개정안 심의를 위한 지방세심의 위원회 개최 (2015.4.8.)
 - → 개최결과 우리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
-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 법제심사의뢰 (기획예산과, 2015.4.9.)
 - → 법제심사결과 통보 (2015.4.10.)

Ⅱ 개정이유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으로 구세감면조례 정비 필요
- 한옥밀집지역 지정·공고(2014.12.26.)에 따른 등록한옥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

Ⅲ 주요 개정 내용

- □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
 - 제명 변경
 - ▷ "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"를 "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"로 변경
 - ※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에 따라 제명 변경
 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38조제4항의 개정으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단계적 축소 (안 제2조)
 - ▷ '16년말까지 조례로 재산세의 75%('17년~'18년말:50%)범위내에서 재산세 경감토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
 - 문화재보호구역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축소 (안 제3조)
 - ▷ 현행 재산세 감면율(100%)을 50%로 축소
 - ▷ 국가기관이 지정하는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법으로 감면율을 축소(100%→50%)하고 50% 추가감면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추가감면하 는 것은 "감면폭 축소지원"이라는 법 개정취지와 기타 제한구역의 감면율 형평성과도 맞지 않아 추가감면 개정은 없으며 이에 따라 시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의 감면율도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 및

-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려 50%로 축소함 (종로구 75%, 중구 50%)
-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종료로 감면조항 삭제 (안 제6조)

 ▷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54조의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기간 만
 료(2014.12.31.)에 따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
- 한옥밀집지역의 지정 공고에 따른 등록한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(안 제10조)
 - ▷ 등록한옥에 대한 재산세(주택,토지,건축물) 50% 경감

●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감면조례	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
제2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	제2조(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
감면율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	감면율)
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38조제	
4항제2호에 따른 "조례로 정하	
는 율"은 <u>100분의 100</u> 으로 한다.	
	<u>2016년 12월 31일</u>
	<u>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, 201</u>
	<u>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</u>
	<u>1일까지는 100분의 50</u>
제3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 「서	제3조(문화재에 대한 감면)
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」에	
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<u>부동산</u>	<u>부동산</u>
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	에 대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

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(「지방세법」제 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 세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를 면 제한다.

제6조(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

감면)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 행령」제27조제2호에 따른 객 실요금 인하율은 2007년 1월 1 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 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것을 말한다.

- 1. 특급호텔 : 20%
- 2. 특급호텔 이외 호텔 : 10%

 <신 설>

법」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를 면제하고,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 0분의 50을 경감한다.

<삭 제>

제10조(등록한옥에 대한 감면)

「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및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등록한 한옥(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)에 대한 재산세(「지방세법」제11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.

1. 주택: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.

2. 토지: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. 다만,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토지를 제외하며, 1구내 한옥과 한옥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.

3. 건축물 :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.

<u>제11조</u> ~ <u>제17조</u> (현행 제10조 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)

<u>제10조</u> ~ <u>제16조</u> (생 략)

Ⅳ 향후 추진 일정

○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2015. 4. 15.

● 구의회 상정 : 2015, 4월 제234회 임시회

첨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